

수원대학교 교원인사규정

- 제 정: 1989. 10. 01
- 개 정: 1994. 05. 11
- 개 정: 1998. 01. 31
- 개 정: 1998. 02. 11
- 개 정: 1998. 05. 07
- 개 정: 2006. 06. 30
- 개 정: 2007. 10. 15
- 개 정: 2012. 03. 01
- 개 정: 2014. 12. 01
- 개 정: 2015. 08. 01
- 개 정: 2016. 08. 01
- 개 정: 2017. 06.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종류) ①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교원(이하 “전임교원” 이라 한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강사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계열”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에는 직무의 일부인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강의전담교원),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연구전담교원) 또는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산학협력교원)을 둘 수 있다.

③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직위는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교원 외에 연구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이하 “비전임교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비전임교원 및 강사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교원인사위원회

제4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본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 제5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조직 및 운영)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임 용

제6조(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임기만료 이전에 승진, 강임된 때에는 그때로부터 새로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하며, 휴직한 교원의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년계열 전임교원

가.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 교 수 :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 교 수 : 3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 2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제 교원을 신규채용 및 재임용 하는 경우에는 보수, 근무조건, 교원의 의무조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그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단, 보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의 교수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각 직위의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연한은 부교수 8년, 조교수 7년으로 한다.

⑥ 임용기간 중 제 5항에 정한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제 1항의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직위 최고 근무연한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임용시기) ① 신규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승진은 매년 4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행한다.

③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④ 승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제8조(겸직금지) 교원은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교원이 타기관의 비상근직을 위촉받은 경우 또는 국가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제9조 (임용자격) 교원의 각 직위별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채용의 경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조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또는 석사학위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각각 만 2년, 4년 이상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부교수는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각각 만 6년, 7년, 9년 이상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고 그 업적이 현저한 자
3. 교수는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각각 만 9년, 12년, 14년 이상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고 그 업적이 현저한 자

제10조(신규채용의 절차, 조건, 심사방법 등)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절차, 조건, 심사방법 등은 신규교원임용세칙에 따른다.

제11조(경력 연수 계산) 신규채용이 확정된 자의 연구경력 및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연구 및 교육경력은 한 기관에서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 ② 경력 환산을 산출기준은 “별표1” 과 같으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항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제출서류) 교원임용대상자는 “별표2” 에 정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용취소 및 변경) 교원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조회결과 상이한 경우는 임용된 후에도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호봉획정) 호봉제 교원의 직위별 호봉은 “별표3” 과 같다.

제15조(재임용)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심의를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재임용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임용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2. 교원업적평가표 1부.
 3. 업적평가 자료 각 1부(심사대상 실적물에 한함)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⑤ 교무처장은 재임용 대상자의 업적평가자료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한 후, 심사결과와 관련 심사자료를 함께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재계약) 심의 및 임용동의를 거쳐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재임용을 제청한다.
- ⑥ 평정결과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재임용(재계약)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재임용 조건) ① 재임용을 위해서는 임용기간 내에 “별표4”에서 정하는 업적평가와 근무성실도평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정년계열 전임교원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외국인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 기본점수 및 연구실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시 별도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은 약정서에 명시된 교원의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제출된 실적물에 대한 심사기준은 업적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④ 교무위원 및 총장이 특별업무를 부여한 교원의 경우 그 직위와 보직담당기간을 기준으로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업적평가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재임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1. 제 16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
2. 휴직기간이 경과되거나 국외여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 또는 복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교원으로서의 자세 또는 품위 등에 문제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교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8조(승진) ① 교원의 각 직위별 최저 기본 승진임용 자격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② 승진임용시의 연구실적물은 임용전 직위 재직기간중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③ 교원의 승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 총장은 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본교 실정에 맞추어 교원의 직위별 승진 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승급) ① 호봉제교원의 승급은 11호봉까지는 1년에 1호봉씩, 10호봉부터 1호봉까지는 1년 6월에 1호봉씩 승급될 수 있다.

② 승급은 교원의 신규임용일부터 1년이 경과된 해의 3월 1일 또는 9월 1일에 행한다.

③ 승급을 위해서는 승급기간내에 정한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업적평가 총점	연구실적	근무성실도평가
160점 이상	40점 이상 (국내논문 A급 1편 포함)	① 업적평가표 4-1 교육활동 영역 근무성실도평가에서 각 평가항목별 평균 7.5점 이상 ② 각 평가항목별 'D(미흡)' 평가가 2개 미만

제20조(승진·승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이나 승급이 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절차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교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

가. 정직 : 3년

나. 감봉 : 2년

다. 견책 : 1년

3. 비위사실로 인하여 기소 중인 때, 감사원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

4. 업적평가표 '4-1 교육활동 영역 근무성실도평가' 에서 평점 7.5점에 미달하거나 2개 이상의 항목에서 'D(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교원

② 승진·승급이 제한된 교원은 그 사유의 종료일 이후 해당 승진·승급일에 대상이 된다.

제21조(특별승진·승급) 본교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현저한 자는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있다.

제22조(교원업적평가) ① 승진, 승급 및 재임용 등을 위한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② 교원업적평가 결과 승진, 승급 및 재임용 조건 미충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승진, 승급 및 재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다.

③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승급 및 재임용, 교원 포상 등에 있어서 일정부분 반영한다.

제23조(연구실적 하한) ① 정년보장 교원은 임용기간 중에 다음 점수 이상의 연구실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퇴직 예정일까지 잔여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

다.

1. 인문·사회 및 이공계 : 국내논문 A급이상 연구실적 년 20점 이상 취득
2. 예·체능계 : 제1호와 동등한 실적

② 정년보장교원이 제1항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종 교내연구지원사업, 연구년 신청, 교내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매학기 책임시수 3시간을 추가한다. 또한 2년 연속 제 1항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개인 연구실을 회수 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또한 책임시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3년 연속 제 1항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계열전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신규임용 후 4년 경과한 때부터 현저히 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계열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계열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교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4 장 신 분 보 장

제25조(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달한 교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26조(휴직)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44조 내지 제50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은 정관 제48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상 별

제28조(포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포상 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한 경우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할 때
3.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적이 인정될 때

제29조(징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 법령, 법인 및 본교의 제규정, 지시등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대학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 ②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원징계규정에 정한다.
- ④ 본교의 제 규정등을 위반하였으나 징계사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는 경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장 복 무

제30조(복무) 교원은 교직원복무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복무한다.

제 7 장 인 사 기 록

제31조(인사기록)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 관리는 교무처 교무과에서 관장한다.

제32조(서류보관) 교무과는 다음 각 호의 인사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1. 임용에 관한 서류
2. 표창에 관한 서류
3. 징계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6. 기타 인사에 관한 서류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시에 재직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진 및 승급된 것으로 본다.
- ③ 전항의 기간은 그 임용, 승진 및 승급일자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시에 재직 중인 대학원교원은 종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승진 자에 대한 연구실적을 조교수 2007년, 부교수 2008년, 교수 2009년까지 각각 “별표4” 와 같이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재임용 자에 대한 업적평가 점수 적용은 전임강사 2007년, 조교수 2008년, 부교수 및 교수 2009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수에 대한 제 5조(임용기간) 제 ⑤항의 규정적용은 시행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 ①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임강사 중 2012년 4월 1일 미승진자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조교수로 본다.
- ③ (경과조치) 2012년 7월 21일 이전에 직위가 조교수인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한하여 종전 승진자격을 갖는다.

부 칙

- ①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승진대상교원 경과조치) 2015년 4월 1일 이후 승진대상교원의 연구실적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조건을 1/n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2015년 2월 28일 이전 조건은 종전 조건을 적용한다.
- ③ (승급대상교원 경과조치) 제19조의 승급 대상교원의 충족조건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2015년도에 한하여 “별표6”에 정한 조건을 적용한다.
- ④ (2002년 1월 1일 이전 신규임용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원 중 2015년 재임용 대상교원은 “별표7”에 정한 바에 따르며, 2016년 이후 재임용은 개정된 조건을 1/n로 나누어서 적용하고 2015년 2월 28일 이전 조건은 종전 조건을 적용한다.
- ⑤ (연봉제교원 재약정조건에 대한 경과조치) 2014년 9월 1일 이전 약정한 교원 중 임용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교원의 업적평가 점수 반영 및 약정조건은 “별표8”로 변경 환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 ①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6조(재임용조건)은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 ①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6조(재임용조건)은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 ①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대상) 제16조(재임용조건), 제18조(승진) 및 제19조(승급), 제20조(승진·승급 제한)은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 및 신규임용 교원에게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제16조(재임용 조건), 18조(승진) 및 제19조(승급), 제20조(승진·승급 제한)에 있어서 근무성실도 평가의 적용은 본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재임용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교원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재임용계약을 갱신하여 약정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교원의 경력환산율표

번호	경력종별	환산율(%)
1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력을 인정받은 대학 또는 초급대학 정도의 각종학교에서 조교 또는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2. 국방대학원에서 교수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직으로 근무한 경력 3. 사관학교의 교관(교수부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 포함)를 대학,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6. 석사학위과정 이수자의 연구경력(학위취득자)은 2년으로 인정 7. 박사학위과정 이수자의 연구경력(학위취득자)은 3년으로 인정 	100%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포함)에서의 전공분야를 국가기관 및 산업체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상근직으로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및 계리사 개업기간과 판사, 검사로 근무한 경력 4.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 인정 기관의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 5.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6. 대학(전문대 포함)에서의 전공한 분야를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8. 공과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사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70%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대학 또는 전문대정도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2. 대학(전문대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60%

번 호	경 력 종 별	환 산 율(%)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교원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력 2. 공인된 체육단체(공익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3. 대학 또는 초급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험 4.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5.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6. 대학(전문대 포함)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7.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경력 8. 상과대학 졸업자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9. 공인회계사, 세무사 개업기간 10.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11.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 	50%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40%
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 2, 3, 4, 5항 이외의 경력 	30%

(별표 2)

교원임용대상자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1.인사기록카드 2부	소정양식
2.민간인신원진술서 5부	소정양식
3.대학졸업증명서 1부	
4.석사학위증명서 1부	
5.박사학위증명서 1부	
6.이력서 3부	소정양식
7.연구및 경력증명서 각 1부	
8.기본증명서 2부	
9.주민등록등본 4부	
10.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11.건강진단서 1부	
12.교원신상기록카드 2부.	
13.사진 5장	

호봉획정 산정표

기 간	1 년											1년 6월															
	호 봉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교 수									0	1	2	3	4	5	6	7	8	9	10	12	13	15	16	18	19	21	22
부교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8	19	21	22	24	25
조교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19	21	22	24	25	27	28

- ※ 호봉획정시(교수10년, 부교수7년, 조교수4년) 경력연수에서 감한다.
- ※ 호봉획정시 7개월 이상일 경우 → 1년, 6개월 이하일 경우 → 0
- ※ 호봉획정시 11호봉까지는 1년, 10호봉부터는 1년 6개월로 한다.
(예: 11호봉->10호봉 1년, 10호봉->9호봉 1년6월)
- ※ 호봉부여는 최대 1호봉까지로 한다.
-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1개만을 산입한다.

(별표 4)

재임용조건

① 2002년 2월 28일 이전 신규 임용교원

직 위	소요기간	최저 업적평가 기본점수 총점	연구실적			
			연구실적(6년)			근무성실도평가 (6년)
부교수	6년 이내의 계약기간	1,020점 또는 계약기준	계열	국제논문A/B급	국내논문 A급	
			인문/법정	-	480점이상	
			경상	60점이상	300점이상	
			이공A	180점이상	180점이상	
			이공B	90점이상	270점이상	
			이공C	60점이상	300점이상	
			미술/음악/무용 /연극영화	-	480점이상	

② 2002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교원

직 위	소요기간	최저 업적평가 기본점수 총점	연구실적			
			계약기준			근무성실도 평가 (1년)
교 수	계약기간	계약기준	계약기준			
부교수 또는 조교수	1년	170점 또는 계약기준	연구실적(1년)			① 평 점 7.5점 이상 ② D(미흡)이 하 2개 미 만
			계열	국제논문A/B급	국내논문 A급	
			인문/법정	-	80점이상	
			경상	10점이상	50점이상	
			이공A	30점이상	30점이상	
			이공B	15점이상	45점이상	
			이공C	10점이상	50점이상	
			미술/음악/무용/ 연극영화	-	80점이상	

- 다년 임용계약의 경우에는 1년 조건 X 계약 연수로 정한다.
- 정년계열 전임교원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외국인 교원의 경우에는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 기본점수 및 연구실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시 별도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계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예·체능계열에서 이론을 주로 연구하는 교수에 대하여는 사회계열로 구분한다.
 - 이공계열 B는 수학과, 통계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이공계열 C는 건축공학과 설계전공, 도시부동산개발학과, 아동가족학과, 의류학과이며 그 외의 이공계열학과(부)는 이공계열 A로 분류한다.
- 별표 4, 5의 연구실적에 있어서 예·체능계열 교원은 이와 동등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별표 5)

최저승진임용조건

구 분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최저 근무연수		6년			5년				
구분		업적 평가 (총점)	연구실적(6년)			업적 평가 (총점)	연구실적(5년)		
			국제논문A/B급	국내논문A급	합계		국제논문A/B급	국내논문A급	합계
연구 실적 (%)	인문/법정 계열	1,020점	-	480점이상	480점이상	850점	-	400점이상	400점이상
	경상계열		60점이상	300점이상	360점이상		50점이상	250점이상	300점이상
	이공계열 A		180점이상	180점이상	360점이상		150점이상	150점이상	300점이상
	이공계열 B		90점이상	270점이상	360점이상		75점이상	225점이상	300점이상
	이공계열 C		60점이상	300점이상	360점이상		50점이상	250점이상	300점이상
	예 체 능 계열		미술	-	480점이상		480점이상	-	400점이상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인사 평가	전계열 공통	① 업적평가표 4-1 교육활동의 근무성실도평가에서 각 평가항목별 평균 8점 이상 ② 단 D(미흡)이하 항목이 평균 2개 이상인 경우 승진 제외			① 업적평가표 4-1 교육활동의 근무성실도평가에서 각 평가항목별 평균 8점 이상 ② 단 D(미흡)이하 항목이 평균 2개 이상인 경우 승 진 제외				

① 연구실적은 계약기간에 따라 1/n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미소지자는 최저 근무연수가 1년 연장되며, 6개월 이상의 연구년, 파견중인 교원의 해당기간은 승진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6)

호봉승급에 대한 대한 경과조치

2015년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 분	업적평가 점수	업적평가 기본점수
업적평가 점수	70점 이상	150점이상 (국내B 30점 포함)

(별표 7)

2002년 1월 1일 이전 신규임용교원에 대한 재임용조건 경과조치

임용기간중 2015년도 재임용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직 위	2015년도 재임용 조건	
	연구실적	최저 업적평가기본점수
부 교수	국내B 30점	150점

단, 재임용 평가 대상 기간중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연구실적이 300%이상 충족한 경우는 업적평가 기본 점수만 적용하며, 2014년 9월 1일 이전 업적평가점수에 2.2를 곱하여 적용함.

(별표 8)

연봉제교원 재약정 조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약정된 교원은 2014년 4월 30일 업적평가 결과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재약정 조건을 평가한다.

- 2014년 4월 30일 기준 점수 반영 항목 및 환산 점수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포함	연구포함	봉사	업적평가점수	교육포함	연구포함	기타	업적평가점수
강의평가 가산점	추가약정 논문편수	교내 및 가산점	70점	전체포함	추가약정 논문편수	전체포함	150점
강의평가 가산점	54점 및 추가약정 논문편수	교내 및 가산점	85점	전체포함	80점 및 추가약정 논문편수	전체포함	170점

② 2014년 3월 1일부터 약정된 교원은 2014년 10월 30일 업적평가 결과점수를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재약정 조건을 평가한다.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포함	연구포함	봉사	업적평가점수	교육포함	연구포함	기타	업적평가점수
강의평가 가산점	추가약정 논문편수	교내 및 가산점	60점	전체포함	추가약정 논문편수	전체포함	140점
강의평가 가산점	추가약정 논문편수	교내 및 가산점	70점	전체포함	추가약정 논문편수	전체포함	150점
강의평가 가산점	54점 및 추가약정 논문편수	교내 및 가산점	85점	전체포함	80점 또는 추가약정	전체포함	170점

(별지1)

재임용(재계약) 신청서

소 속 :

직 위 :

신청자 성명 : (인)

재임용(재계약) 만료일 : 년 월 일

업적평가 제출서류 마감일 : 년 월 일

상기본인은 재임용(재계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적평가 반영 년도	발간일자	저자 수	저서명 또는 논문명	학회명	출판사 또는 학술지명	인정 점수
계			편			

1. 공연·전시의 경우는 논문명에 공연·전시명, 학회명에 공연·전시 주관기관, 학술지명에 공연·전시 장소를 기입하고, 저자수에 공연참여자 수를 기입.
2. 기간제교원 연구실적 심사기준 : 교원인사규정 별표4의 직급별 기간중 연구실적점수 이상
3. 계약제교원 연구실적 심사기준 : 약정서에 명시된 교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건
4. 연구실적 인정비율 : 교원업적평가 업적물 판별 기준표에 의하여 기록
5. 재임용(재계약)은 업적평가 점수와 연구실적이 각각 기준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6. 재임용의 제한
 - ① 각 지위의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직위에 근무할 수 있는 최장연한은 부교수 8년, 조교수 7년으로 한다. (2008.3.1부터 적용)
 - ② 제 1항의 각 지위 최장근무 연한은 정년보장 임용 또는 재임용 기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계약 임용기간 중 제 5항에 정한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교원은 제 1항의 계약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이라도 동일 직급 최고 근무연한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한다.

년 월 일

수원대학교 총장 귀하

※ 업적평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재임용(재계약) 신청서 미제출시 임면 종료일자에 면직됨을 알려드립니다.